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규정 제 14 호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」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규정」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(이하 ”의회“라 한다)”는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 ”의회“라 한다)”라 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의정담당주사”는 “의정홍보담당주사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 중 “행정관리위원장”은 “행정복지위원장”으로 하고 “복지건설위원장”은 “재정건설위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·제5호·제6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5년 12월 30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

류 상 호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#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#### 1. 개정이유

2014년 8월 7일 개정·시행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어,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아울러 제명과 기타 경미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개정
- 나.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 
(별지 제4호, 제5호 및 제6호 서식)

#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등
  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 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명: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</b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b>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</b>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1조(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~④(생략)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<b>의정담당주사</b>로 한다.</p> <p><b>[별지 제4호서식]</b></p>	<p><b>제명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규정</b></p> <p>제1조(목적) …… <b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</b>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제11조(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~④(생략) ⑤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<b>의정홍보담당주사</b>로……………</p> <p><b>[별지 제4호서식]</b></p>
<p><b>[별지 제5호서식]</b></p>	<p><b>[별지 제5호서식]</b></p>

현행	개정안
[별지 제6호서식]	[별지 제6호서식]

관계법령

개인정보 보호법

[시행 2015.7.24.] [법률 제13423호, 2015.7.24., 일부개정]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<sup>1)</sup>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8.6.]

1)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고유식별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 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